

「IBK동반자펀드(1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IBK동반자금융* 실현과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IBK동반자펀드」의 매칭 출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장, 재도약, 선순환의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을 지원하는 플랫폼

1. 선정개요

항 목	내 용				
위탁운용금액	총 300억원 이내				
선정운용사수	○ 3개사 이내 (단위: 개, 억원)				
		총출자금액	선정운용사 수	운용사별출자금액	출자비율
	VC (성장금융)	200	2	100	20%이내
	PE (재도약금융)	100	1	100	10%이내
합계	300	3	-		
출자대상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p>※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p> <p>※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 전에 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p>				

<p>운 용 사 신 청 자 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출자자*(이하 동일) 출자사업의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운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KIF, 국민연금, 한국벤처투자 등 출자사업별 공고(Beauty Contest)를 통한 공정한 심사 후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기관 ○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한국성장금융의 타 출자사업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경우 사전 협의 필요
<p>운 용 사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출자 확약(LOC 기준)금액을 근거로 연내 결성 가능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기결성한 펀드의 경우 패널티 없는 멀티클로징에 한해 허용 ○ IBK기업은행의 동반자금융** 실현에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심사평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장금융 : www.kgrowth.or.kr (출자사업공고) ** IBK기업은행 : www.ibk.co.kr (은행소개)
<p>접 수 일 시</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18일(월) 16:00까지</p> <p>(주목적 투자대상, 출자조건 등 공고 조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 협의 또는 문의)</p>
<p>심 사 결 과 발 표</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2월 하순</p>
<p>펀 드 결 성 시 한</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6월말</p>

2. 투자대상

□ 투자대상은 법인 형태의 중소·중견기업*

- 주요출자자의 주목적 투자분야, 펀드 운용 전략과 IBK동반자펀드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
- 해외투자는 주요출자자와 협의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주목적 투자대상

□ 혁신기술 보유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기업, 신성장산업 선도 기업 등을 기업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 가능하도록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

예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는 혁신기술 보유 기업, ICT융복합·인공지능(AI)·산업에 영위하는 기업 등을 투자 전략과 함께 제시

* 핀테크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나 LP지분 인수(세컨더리)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위탁운용사는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이번 공고에 따른 지원은 불가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운 용 사 출 자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출자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름 ○ 약정총액의 1%* 이상 * LL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을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존 속 기 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 자 기 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납 입 방 식	○ 수시납 또는 분할납
관 리 보 수	○ 주요출자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되,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운용규모 구간별 보수율이 타당한지 검토
성 과 보 수	○ 주요출자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되, 출자사업 특성상 추가성과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이를 주요출자자의 지분에 한정
운 용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출자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되, 대표펀드매니저 또는 핵심 운용인력 참여 인원수 및 경력을 고려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출자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 출자대상 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기구일 경우, 동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지정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출자자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펀드전자보고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과정에서 주요출자자가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적법한 투자업무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투자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운영 및 투자업무 집행에 있어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간투자사로서 성실한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투자업무집행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민간투자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간투자사 내 운용인력과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민간투자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 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안정적 투자업무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투자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민간투자사로서 성실한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취소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함
 - 다만, 관련 법규 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하며, 기 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함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간 출자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 현장실사 → 2차 심사(구술) → 최종선정

□ 선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2019.11.18.(월)	당일 16:00까지 접수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19. 12월 하순	개별통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방법

□ 지원방법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제출서류양식」에 별도 공지 예정)
- 2차 심사(구술)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8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및 파일 별도 지참)

□ 출자설명회

- 일 시 : 2019년 10월 29일(화) 10:00 ~ 12:00
- 장 소 : 금융투자교육원 901호
 - * 출자설명회 일시,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4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출자사업팀 (02-2090-9123)
E-mail : sypark@kgrowth.or.kr

2019년 10월 24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공고일, 접수일 등 일정은 내·외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